# 전임교원 책임 수업시수 및 교원의 강사료 지급 규정

제정 2022. 2. 8.

# 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호서대학교 전임교원 책임 수업시수(이하 '책임시수'라 한다) 및 교원의 강사료 지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# 제2조(용어의 정의)

- ① "책임시수"는 전임교원이 담당해야 하는 학기별 주당 최소 강의시수를 말한다.
- ② "한계시수"는 전임교원이 강의할 수 있는 주간 최대 수업 가능 시간 단위를 의미한다.
- ③ "초과강의"는 전임교원이 책임시수를 초과하여 담당한 강의를 말한다.
- ④ 강사료는 초과강의강사료, 강사강사료 및 비전임교원강사료로 구분한다.
  - 1. "초과강의강사료(이하 '초과강사료'라 한다)"는 전임교원의 초과강의에 대하여 지급하는 강사료를 말한다.
  - 2. "강사강사료"는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를 말한다.
  - 3. "비전임교원강사료(이하 '비전임강사료'라 한다)"는 강사가 아닌 기타 비전임교원에게 실제 강의 실시 시간에 따라 지급하는 강사료를 말한다.

#### 제 2 장 책임시수

- 제3조(책임시수) ① 본 대학교 전임교원의 학기당 책임시수는 교원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호를 원칙으로 한다.
  - 1. 정년트랙 전임교원
    - 가. 교육중심교원 : 10시수
    - 나. 연구중심교원/봉사중심교원 : 9시수
    - 다. 산학협력중심교원 : 6시수
  - 2. 비정년트랙 전임교원
    - 가. 교육중심교원 : 12시수
    - 나. 연구중심교원/봉사중심교원 : 9시수
    - 다. 산학협력중심교원 : 6시수
    - 라. 외국인회화교원: 14시수

### 제4조(책임시수의 감면)

- ① 보직을 수행하는 교원의 주당 책임시수는 별도로 정한다.
- ② 2개 이상의 보직을 겸직하는 경우 책임시수가 가장 적은 한 개 보직을 기준으로 적용한다.
- ③ 본 대학에서 10년 이상 근속한 전임교원은 정년퇴직 직전학기에 한하여 책임시수를 3시수로 한다.(단, 초과강사료 지급 시 책임시수는 원 책임시수를 기준으로 한다.)

#### 제 3 장 강사료의 계산 및 지급

제5조(강사료의 계산) ① 전임교원의 강의시수가 책임시수를 초과하는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초과강 사료를 계산한다(별표. 전임교원 초과강사료 시수 계산 예시 참조).

- 1. 시수 계산은 대학 및 대학원의 담당 시수를 합산한다.
- 2. 초과강사료 지급 시 책임시수는 연간 책임시수로 계산하여 적용한다.
- 3. 초과강사료 시수당 지급단가는 매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한다.
- 4. 교과목 수강학생의 규모, 강의제공 방법 등에 따라 시수당 지급단가의 일정비율을 가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.
- 5. 대학의 전임교원이 계절학기 및 기타 부속기관 수업과 외부에서 운영하는 이러닝교과목(충남 이러닝, 군이러닝, 공유대학 등)을 담당한 경우 별도 기준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하고, 책임시수 및 초과강사료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.
- 6. 학기 중 보직 임면에 따른 책임시수는 보직 임면 전·후 책임시수를 비교하여 그 중 적은 시수를 기준으로 적용하며, 이 때, 책임시수는 학기별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7. 보직을 받은 첫 학기에는 보직 임명 전·후 책임시수를 비교하여 초과강사료 산정에 유리 한 책임시수를 적용한다.
- 8. 교원이 담당하는 한계시수는 책임시수의 2.5배로 하며 보직 임명 등에 따라 감면된 책임시수 도 동일하게 적용한다.
- ② 강사강사료 및 비전임강사료는 아래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.
  - 1. 강사강사료 및 비전임강사료의 시수당 지급단가는 매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한다.
  - 2. 강사강사료는 강사가 담당하는 해당 학기의 수업시수를 기준으로 총 17주분을 계산한 금액을 해당 학기의 강사강사료 총액으로 한다.
  - 3. 비전임강사료는 강사가 아닌 기타 비전임교원의 해당 학기의 수업시수를 기준으로 총 15 주분을 계산한 금액을 해당 학기의 비전임강사료 총액으로 한다.

제6조(강사료의 지급) ① 전임교원 초과강사료는 학년도 2개 학기를 합산하여 관리하며, 매 학년도 2학기에 초과강사료를 지급한다. 단, 퇴직예정자 및 연구년 교원은 학기당 지급할 수 있다.

- ② 강사강사료는 해당 학기 강사료 총액을 6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.
- ③ 비전임강사료는 해당 학기 강사료 총액을 4회 분할하여 지급한다.
- ④ 전임교원 초과강사료 및 비전임강사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달 5일 이내에 지급한다.
- ⑤ 강사강사료는 매월 급여일에 지급한다.

#### 제 4 장 책임시수 이행관리

제7조(책임시수 이행관리) 책임시수 이행관리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른다.

- 1. 교무처는 1학기 강의개설 확정 후 책임시수 미충족 전임교원과 소속 학부(과)장 또는 부서 장에게 미충족 사실을 통보한다.
- 2. 1학기 책임시수 미충족 전임교원은 2학기 보충이행계획서를 소속 학부(과)장 또는 부서장을 경유하여 제출한다.
- 3. 1학기 책임시수 미충족 전임교원은 2학기 책임시수 보충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, 해당 전임

- 교원의 소속 학부(과)장 및 부서장은 해당 전임교원이 2학기에 책임시수를 보충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- 4. 교무처는 2학기 강의개설 확정 후 해당 학년도 최종 책임시수 미충족 전임교원과 소속 학부(과)장 및 부서장에게 미충족 사실을 통보하고, 해당 전임교원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속 학부(과)장 또는 부서장을 경유하여 책임시수 미충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다.

### 제8조(책임시수 이월 및 대체)

- ① 전임교원이 학년도별 연간 책임시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, 미충족된 시수만큼 급여에서 조정하여 지급(환수)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연간 책임시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교무처장 승인하에 미충족 시수를 다음 학년도의 책임시수에 합산할 수 있다.
- ③ 전임교원이 책임시수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 책임시수 상당의 활동으로 책임시수를 대체할 수 있다. 단,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- 제9조(책임시수 미충족에 따른 급여환수) 전임교원이 학년도별 연간 책임시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미충족된 시수 1시수당 강사강사료 시수당 지급단가에 수업 주 수를 곱한금액으로 계산하여 책임시수 미충족 전임교원의 급여에서 월할하여 공제하며, 이로써 미충족된 시수를 보충한 것으로 한다.

# 부 칙(2022. 2. 8.)

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

#### 2조 (기타사항)

- 1. 책임시수 미충족 교원이 이직 등 예고치 아니한 퇴직시 별도의 절차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.
  - 2. 본 규정 제정 이전 5년간 책임시수 미충족사실이 있는 전임교원은 향후 2년 이내에 보충 이행하여야 하며, 불가피한 경우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 책임시수 상당의 활동으로 책임 시수를 대체할 수 있다.
  - 3.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.

### [별표] 전임교원 초과강사료 시수 계산 예시

구분	학기당 책임시수 (a)	연간 책임시수 (b=a×2)	연간 담당강의시수 (c)	한계시수 (d=b×2.5)	초과강사료 산정시수 (e=Min[c-b,d-b])
A 정년트랙 교육중심교원	10	20	40	50	20
B 비정년트랙 산학협력중심교원	6	12	40	30	18